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8

발의연월일: 2020. 10. 8.

발 의 자:서영교·최형두·이성만

윤재갑 · 김병기 · 전혜숙

오영환 · 윤준병 · 이개호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농어민의 직·간접적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모두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 확산으로 인한 내수 침체, 가정보육으로 인한 단체 급식 중지 등으로 인하여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이 많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경감 및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u>2020년 12월 31일</u> 까지 경	<u>2025년 12월 31일</u>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u>.</u>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				
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면) ①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				
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 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 1일까지 면제한다.
- 3. (생략)
-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

1
<u>2025년 12월 31일</u>
2
2025년 12월 3
1일
3. (현행과 같음)
②

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 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 1일까지 면제한다.

3. (생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제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 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1				
<u>2025년 12월 31일</u>				
2				
<u>2025년 12월 3</u>				
1일				
3. (현행과 같음)				
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 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 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 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 한다.

			 	- <u>202</u>
<u>3년</u>	12월	31일-	 	